



제 432회 국회 (임시회)
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이행의무 규정 등〉

■ 정태호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13754호)

2026. 2.

재정경제기획위원회

전문위원 임명현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1.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이행의무 규정 등(안 제9조)	2

I. 제안경위

가. 발 의 자 : 정태호의원 등 12인

나. 발 의 일 : 2025. 10. 28.

다. 회 부 일 : 2025. 10. 29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정부가 매년 예산·기금 등의 재정정보를 공표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계·기금 등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재정통계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재정정보의 공표나 재정통계의 작성 시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중앙관서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료 제출의 이행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재정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측면이 있음.

이에 재정경제부장관 등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 등은 이에 따르도록 하고, 재정경제부장관 등은 필요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등에게 재정정보 및 재정통계에 관한 사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정보 등이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9조제3항 후단 신설 등).

Ⅲ. 검토의견

1.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이행의무 규정 등(안 제9조)

현 행	개 정 안
○ 재정정보의 공표 -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재정정보의 공표 또는 제2항에 따른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. <후단 신설> <신 설>	○ 재정정보의 공표 -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재정정보의 공표 또는 제2항에 따른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. <u>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</u> -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은 <u>제3항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의 효율적 활용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 등에게 관련 사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</u>

현행법 제9조1)2)는 정부가 예산, 기금, 결산, 국채, 차입금, 통합재정

- 1) 「국가재정법」 제9조(재정정보의 공표) ①정부는 예산, 기금, 결산, 국채, 차입금, 국유재산의 현재액, 통합재정수지 및 제2항에 따른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보통신매체·인쇄물 등 적당한 방법으로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표하여야 한다.
-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(이하 “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”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2호와 제3호에 관하여는 해당 기관 및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
1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, 특별회계 및 기금
 2. 다음 각 목의 기관 중 시장성이 없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
 - 가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
 - 나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·공단
 - 다. 그 밖에 공영방송사·국립대학법인 등 공공성이 인정되는 법인
 3. 제2호 각 목의 기관 중 시장성이 있는 기관(금융을 다루는 기관은 제외한다)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

수지 등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며,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여금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을 기준으로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.

이는 정부가 재정상황에 대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,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임.

-
- ③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재정정보의 공표 또는 제2항에 따른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중앙관서의 세입·세출예산 운용상황을, 각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·운용하는 자(기금의 관리 또는 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외하며, 이하 “기금관리주체”라 한다)는 해당 기금의 운용상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- ⑤ 제4항의 세입·세출예산 운용상황 및 기금 운용상황 공개에는 각 사업별 사업설명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. 그 밖에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⑥ 기획예산처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하며, 지침과 서로 다를 경우 시정 요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.
- 2) 「국가재정법」 제9조(재정정보의 공표) ①정부는 예산, 기금, 결산, 국채, 차입금, 국유재산의 현재액, 통합재정수지 및 제2항에 따른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보통신매체·인쇄물 등 적당한 방법으로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표하여야 한다.
-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(이하 “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”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2호와 제3호에 관하여는 해당 기관 및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
1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, 특별회계 및 기금
 2. 다음 각 목의 기관 중 시장성이 없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
가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
나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·공단
다. 그 밖에 공영방송사·국립대학법인 등 공공성이 인정되는 법인
 3. 제2호 각 목의 기관 중 시장성이 있는 기관(금융을 다루는 기관은 제외한다)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
- ③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재정정보의 공표 또는 제2항에 따른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중앙관서의 세입·세출예산 운용상황을, 각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·운용하는 자(기금의 관리 또는 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외하며, 이하 “기금관리주체”라 한다)는 해당 기금의 운용상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- ⑤ 제4항의 세입·세출예산 운용상황 및 기금 운용상황 공개에는 각 사업별 사업설명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. 그 밖에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⑥ 기획예산처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하며, 지침과 서로 다를 경우 시정 요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.

또한, 현행법 제9조제3항은 이러한 재정정보의 공표 및 재정통계 작성을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,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근거만 규정하고 있을 뿐,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는 이행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는 한계가 있음.

특히 최근 정부조직개편으로 기존의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면서 예산 권한이 사라진 재정경제부의 정책조정 기능이 제대로 수행될지 그 권한 약화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임.

따라서 개정안은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재정정보나 재정통계의 작성 및 공표 등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는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한편, 제출되는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사무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요구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 등은 이를 이행할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임.

개정안과 같이 자료제출 및 사무 개선 요구에 대한 이행 의무를 현행법에 명시하는 경우 재정정보나 통계의 적시성 및 정확성이 제고될 수 있으며, 재정통계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강화되어 재정투

명성 및 건전성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.

동 개정안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재정정보의 표준화와 통합적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재정통계의 적시성과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용한다는 입장임.

※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21065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9조(재정정보의 공표) ①·② (생략) ③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재정정보의 공표 또는 제2항에 따른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 ④·⑤ (생략) <신설> ⑥ (생략)	법률 제21065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9조(재정정보의 공표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,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 ④·⑤ (현행과 같음) ⑥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의 효율적 활용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 등에게 관련 사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 ⑦ (현행 제6항과 같음)

문 의 처

02)6788-5152